

보도자료

2014. 2. 6.(목)



대법원

Supreme Court of Korea

담당부서

사법지원실

담당자

사법지원심의관 박성준(☎02-3480-1253)

공보관실 ☎ 3480-1451

“형사사건 증인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증진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서울고등·중앙지방법원 및 광주고등·지방법원 일반증인지원실 구축 및 일반증인지원 서비스 최초 실시”

■ 2014년 2월 10일부터 서울고등·중앙지방법원 및 광주고등·지방법원에서 모든 형사사건의 증인을 위한 일반증인지원실 설치 및 일반증인지원 서비스를 최초로 실시하고, 아울러 기존의 2차 피해를 위한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실 구축 및 특별증인지원 서비스 실시 전 법원 확대 계획임. 특히, 서울고등·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앞으로 매년 약 **16,183명** 이상의 형사사건 증인들이 일반증인지원 서비스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됨¹⁾

■ 2012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부터 순차 확대 실시된 성폭력 피해자 증인을 위한 특별증인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증인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 증인인 경우에도 법원에 형사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으로써 진실발견에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 방청객에 대한 처우와 구별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 형성. 특히,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 증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이

크

- 증인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 등 외국의 사례를 참조
- 일반증인지원실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여성·아동·장애인 증인지원실이 법정동(법관 및 일반직원 업무공간)내에 위치한 것(화상증언실과의 동선 및 법정 출입시 피고인측과의 원치 않는 대면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과 달리 형사 증인들이 법원 출입시 안내데스크 등에서 자연스럽게 증인지원실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민원인동 내의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

▪ 일반증인지원 서비스의 주요 내용

- 안내데스크에서 일반증인지원실로 안내
- 휴식 및 대기공간 제공
- 증인을 위한 절차 안내
- 상담과 정보제공(재판절차, 증인신문, 의견진술 등 절차와 법정구조 안내)

- 강력 범죄 피해자를 포함한 취약 증인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 증인에 준하는 증인지원관의 일대일 지원 서비스 제공(법원 내 증인과 동행, 여성·아동·장애인 증인지원실 내 대기, 증인신문 전후에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 일반증인지원 서비스의 효과

모든 형사사건의 증인이 증인지원실에서 증인신문, 의견진술 등 절차와 법정구조 안내, 신변보호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형사재판에 대한 만족과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실체적 효과 : 위증 예방, 증인의 적극적 참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
절차적 효과 : 증인 보호, 효과적인 증인신문, 재판공전의 방지

1)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사건 증인수(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연 평균
서울고등법원	1,597	1,828	1,947	5,372	1,790.7
서울중앙지방법원	15,645	12,778	14,754	43,177	14,392.3
합계	17,242	14,606	16,701	48,549	16,183

■ 2014년 증인지원실 구축 및 증인지원서비스 실시 개요

- 대법원은 전세계적인 범죄피해자의 보호 강화 추세에 맞추어 영국, 스웨덴 등 증인지원 서비스를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피해자 증인의 보호·지원을 위한 증인지원실 구축 방안을 마련
- 성폭력 피해자 증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2012. 3. 16. 「성폭력범죄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증인지원시설의 설치와 직원의 배치에 관한 조항(제4조)을 신설하고, 20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별증인지원서비스를 실시한 이래 순차로 그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왔고, 국회에서도 성폭력 피해자 증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2013. 6. 19.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 제32조에 성폭력 피해자 증인을 위한 증인지원시설의 설치 및 증인지원관 제도 법제화
- 일반 형사 증인 지원을 위하여 2012. 5. 29.에 「형사소송규칙」에 증인지원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제84조의10)을 마련하였고, 2014년 서울고등법원 및 광주고등법원에 일반 형사 증인을 위한 통합 일반증인지원실을 설치하여, 기존 성폭력 피해자 증인지원관과 일반 형사 증인을 위한 증인지원관으로 구성되는 증인지원조직도 구축함으로써 모든 형사 증인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증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기대효과

◆ 실체적 효과 - 위증의 예방, 증인의 적극적 참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

- 위증의 예방 : 증인지원관과 자원봉사자 등이 재판 전에 증인들에게 형사재판에서 증언의 중요성, 허위증언이 끼치는 해악, 위증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한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위증을 예방
- 증인의 적극적 참여 : 종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국민들에 대해 법

원은 증인소환장을 보낸 이외에 특별한 안내를 한 적이 없었고, 당일 법원에 온 증인은 어렵게 법정을 찾아가 밀려 있는 다른 사건 때문에 법정 근처에서 마땅히 대기할 곳도 없이 한참을 기다리다가 증인석에 앉아서는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으로부터 영문 모를 퍽박을 받다가 여비 몇 만 원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음

- 증인지원 서비스가 시행되면 증인은 증인소환장과 함께 증인지원 서비스에 관한 안내문을 받고 증인지원관에 연락하여 증언 전 미리 법원에 와서 본인이 증언하게 될 법정을 답사할 수 있고 절차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사전답사가 없었더라도 당일 법원에 와서 자신의 증언순서가 될 때까지 증인지원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절차 안내를 받다가 차례가 되면 증언을 하고 여비를 받은 후 집으로 돌아가게 됨. 이런 서비스를 통해 증인들은 재판에 대한 만족과 신뢰, 진실발견과 정의의 실현에 기여하였다는 뿌듯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임
- 실체적 진실의 발견 : 피해자의 증언은 실체적 진실 발견의 전제이며, 증인의 보호·지원은 자유로운 증언의 전제조건, 피해자는 증인이 되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함으로써 형사절차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 증인이 사법기관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많은 경우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므로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증인의 자유로운 증언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임

◆ **절차적 효과 : 피해자 보호, 원활한 증인신문, 재판 공전의 방지**

- 피해자 보호 : 법원은 인권 보장의 궁극적인 보루이므로 수사절차를 통해 각종 스트레스가 가중된 상태에서 법원에 오게 된 증인에 대한 법원 차원에서의 더욱 두터운 보호 필요, 특히, 성폭력 피해자 등 취약피해자 증인이나 강력범죄 또는 조직범죄의 피해자 증인인 국민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서는 재판의 준비 및 신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특별한 보호 및 지원 조치가 필요

- 원활한 증인신문, 재판공전의 방지 : 증인지원관과 자원봉사자가 형사법정의 구조와 재판관여자의 역할, 형사재판의 절차, 증인신문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 피해자 증인인 경우 피해자의 권리, 피해회복을 위한 구제절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나아가 성폭력피해자 등 취약피해자 증인의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 대화와 상담 제공. 이러한 안내와 대화, 상담을 통해 재판장이 법정에서 증인을 위하여 들이는 노력과 수고를 줄일 수 있고 증인신문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임

◆ **신뢰의 증진 : 법원의 증인지원 서비스 시행에 관한 일반의 인식 제고 및 접근 가능성 확대를 통한 법원에 대한 신뢰 증진**

- 1:1 서비스를 전제로 한 성폭력 피해자 등 대상의 특별증인지원 서비스의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증인지원관이 업무를 수행해야 함. 일반증인지원 서비스에서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음
- 현재 법원의 자원봉사자의 임무는 주로 청사 안내나 단순한 절차 안내 등 기계적인 업무에 국한되어 있음. 증인지원관이 자원봉사자를 교육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형사절차 안내 등 증인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법원의 서비스 개선에 대한 홍보 및 법교육의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
-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를 포함한 증인에 대한 증인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해당 사건에서는 사법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에 기인하는 불신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또한, 법원의 소송관계인의 사법절차에서의 편의제공의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법원의 국민의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증인지원실 실제 모습**

◆ 서울 고등법원 · 중앙지방법원



■ 외국사례

◆ 영국

- 영국의 피해자 증인 지원 및 보호 프로그램은 우리보다 20여 년 이상 일찍 시작
- 법정 밖 민원인 통로 쪽에 Witness Service 사무실(민간단체인 Victim Support에서 운영, 재정의 95%이상 국고보조)이 있음
- 증인이 원하는 경우 미리 법정을 방문할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보통 재판이 휴정하고 있는 점심시간에 오도록 함, 증인신문을 하는 당일에는 증인지원인이 직접 증인의 집으로 방문하여 Witness Service 사무실, 법정, 화상증언실에서 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동행 지원 제공(증인지원인이 해당 사건에 관한 법률 상담을 할 수 없고, 증언 절차 및 증인 여비 등 실제적인 부분에 관한 안내를 담당함)